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20호
----------	--------

제출년월일 2024. 2. .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시행 2023.10.11.)
- 용어 등을 현행화하고 생리용품 보편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지원 대상 확대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 「김포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 ~ 제4조)

- 보건위생물품 → 생리용품으로 변경함

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 지원근거 신설(안 제3조)

- (기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여성청소년
+ (신설) 관내 체류등록 외국인 및 관내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여성청소년

라. 배부 → 지원으로 변경(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1. 23. ~ 2. 7. (15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나) 경 기 도 : 청소년과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김포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여성청소년”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으로,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위생물품 구입비”를 “생리용품 구입비”로,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김포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김포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보건위생물품”을 각각 “생리용품”으로 하고, 같은 호 중 “배부”를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가족문화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가족문화과장 최신
	팀장 직위·성명	청소년팀장 최선미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서기 이성인(☎2989)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u></p>	<p><u>김포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u>보건위생물품</u>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생리용품</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청소년”이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u>보건위생물품</u>”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이란</u> ----- -----. 2. “<u>생리용품</u>” ----- -----.
<p>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여성청소년</u>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u>보건위생물품</u>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생리용품</u>-----.</p>
<p><신 설></p>	<p>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p>

<신 설>

<신 설>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3. (생략)

② (생략)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김포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김포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 생리용품 구입비 -----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

-----.

③ ----- 생리용품-----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

-- 생리용품 -----
-----.

1. ----- 생리용품 -----
----- 지원 -----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18.>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③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④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

(이하 “외국인등록번호” 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6. 3. 29.> [전문개정 2010. 5. 1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 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14. 5. 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6. 5. 29.>

③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6. 5. 29.>

④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